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2-35호 / 5월 16일

민간기업 보호를 위한 법률시스템 정비 시급

1. 개요

- WTO 가입에 따른 대외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영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철폐하는 대내적인 개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강(樊綱) 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이 최근 <京華時報>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함.
- 특히 판강 소장은 민간이 대내적인 시스템 차원에서의 불공정한 대우를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 당국을 고발할 수 있도록 법·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함.

2. 주요 인터뷰 내용

- 중국의 법률체제가 과거에 비해 점차 효율화됨에 따라 민영기업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는 방법도 단순히 여론에 호소하는 것 이외에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음.
- 민영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영기업의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지금까

지는 민간기업이 정부측에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킬 방안이 제한되어 있었음.

- 그러나 최근 민간부문에서 정부당국의 부당한 대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는바, 작년 춘절 기차표 폭등 사건에 대해 철도부를 고발한 사례가 대표적임.
- o 당시의 고발 안건은 정식으로 수리되지는 않았지만, 이를 계기로 금년에는 철도부가 가격청문회를 열어 가격을 조정하였음.

- 민간이 당국의 부당한 행위를 감시하고, 이를 법률에 기초하여 해결하려는 상기와 같은 사례는 중국의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이 시장경제에 부응하여 조정되고 있음을 의미함.

□ 개혁개방 이후 진행되어온 경제시스템의 개혁은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인바, 독점을 폐지하고 심사비준제도를 간소화하는 등의 법·제도 개혁도 경제주체간의 합법적인 갈등해결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.

- 현재 일부 민영기업은 국유기업 심지어 외자기업보다도 못한 역차별(‘reversed national treatment’)을 당하고 있음.
- o 이미 법률면에서 민영기업이 국유기업이나 외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민영기업은 금후 부당한 대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.

□ 대외개방만을 강조하여 대내개방을 경시한다면 중국의 시장경제 발전은 심각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으며 경제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없음.

- 과거 연 25%에 달하던 민간기업의 투자 증가율이 최근 10%대로 하락하였는바 민영기업의 발전환경이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을 경우, 대외개방의 긍정적인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큼.(***)